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21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인요한・박준태・장동혁

구자근・성일종・강승규

권영세 • 권영진 • 김예지

최수진 · 김도읍 · 박지원

임이자 · 김석기 · 이병진

조승환 • 이종욱 • 박수영

서지영 · 김용태 · 김재원

김정재 · 김기현 · 송석준

김 건 · 김대식 · 유용원

김소희 • 곽규택 • 조배숙

이성권 · 역태영 · 우재준

의원(3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·제작하도록 하면서, 구급차의 형태·표시·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,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

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,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구급차등을 설계·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 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급차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구급차등의 기준) ① 구급	제46조(구급차등의 기준) ①
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	
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	
제작되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구급차</u>
	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
	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
	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
	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
	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